

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(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4호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, 승마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- 나.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·설비·장비·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. 실외의 경우 폭우, 폭설, 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.
- 라.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.

2. 시설기준

- 가. 등록기관에 등록된 승용말 3마리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
- 나. 말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마사(馬舍)를 갖추어야 한다.
- 다. 마사, 관리자, 마장(가축운동장 등을 포함한다) 그 밖에 부속건물을 합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, 실외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0.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갖추어야 한다.

3. 안전기준

- 가. 이용자가 항상 승마에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나. 승마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승마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.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. 안전요원 배치기준

가. 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

- 1)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
- 2)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체육지도자(승마 체육지도자만 해당한다)
- 3) 그 밖에 제3조제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
나. 배치기준

- 1) 승용말 10마리 이상을 운영하는 승마시설: 가목 1) 및 2)에 따른 안전요원 중 1명 이상
- 2) 승용말 10마리 미만을 운영하는 승마시설: 가목 1)부터 3)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요원 중 1명 이상